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펀드의 별도 결성·운용 〉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00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법 제정 필요성 검토	3
2. 조문별 검토	14
가. 법 제명 및 총칙(안 제1장)	14
나.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 및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안 제2장)	19
다.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안 제3장)	23
라. 보칙·벌칙 및 부칙(안 제4장·5장 및 부칙)	3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황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8. 28.

다. 회 부 일: 2024.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산업은 2020년대 들어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2022년 기준 세계 7위권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세계적 규모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단순히 생산 기지에 머물며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업을 지원·육성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률에 따른 투자 대상인 문화예술기술기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나.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안 제6조).
- 라.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공모 방식의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과 외국인이 출자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23조).
- 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투자가치 등에 관한 정보를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Ⅲ. 검토의견

1. 법 제정 필요성 검토

가. 제정안의 요지

제정안은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별도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문화예술 관련 기업을 지원·육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총 5개 장, 33개 조문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제정안 주요내용 요약]

구 분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안 제1조~제4조)	○ (목적) 문화예술기술산업 투자 촉진, 문화예술기술 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등 ○ (정의) 문화예술기술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산업 ○ (문화예술기술기업의 범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등
제2장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와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 (안 제5조~제9조)	○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 국가는 ‘문화예술기술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 운용 등 목적의 ‘문화예술기술 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음 ○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 공사는 국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모태펀드를 결성할 수 있고, 모태펀드의 자산을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자펀드) 등에 출자할 수 있음

제3장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안 제10조~제23조)	○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 공사 등은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를 결성할 수 있고,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업무의 집행 등) 자펀드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을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공모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법 등에 따른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둠
제4장 보 칙 (안 제24조~제31조)	○ (조세특례) 국가·지자체는 문화예술기술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보고·행정처분·등록취소 등) 문체부장관은 필요시 자펀드 및 공사에게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자펀드의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음
제5장 벌 칙 (안 제32조·제33조)	○ (벌칙) 자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본인 등을 위하여 펀드의 재산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과태료) 결산서 미제출, 시정명령 위반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 칙 (안 부칙 제1조~제3조)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경과조치) 기존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조성된 자펀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

나. 검토의견

정부는 2005년 중소기업투자 및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¹⁾에 따라 ‘투자

1) 「(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288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4. 1. 시행)」 제4조의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이

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중소·벤처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결성·운용하도록 하였음. 이후 2020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위 전문기관은 현재의 '한국벤처투자'²⁾로, 위 모태펀드는 현재의 '벤처투자모태조합'³⁾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정하는 투자관리기관중에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조합(이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2.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3. 벤처투자

4.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5.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6. 벤처투자회사의 육성

7.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한국벤처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한국벤처투자 개요]

□ 기관 개요

- **(설립일)** 2005. 6. 29. (모태펀드 출범과 함께 설립)
- **(설립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 **(기관형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 **(기능)** 모태펀드 운용 및 직접투자, 해외벤처투자자금 유치,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의 육성, VC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 **(비전)** 벤처투자생태계 혁신을 주도하는 벤처금융 전문기관

□ 조직 현황

- **(임원)**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 당연직이사(중기부, 중진공), 사외이사(3)
- **(정원)** 162명(현재 기준)
- **(조직)** 6본부, 3실, 16팀, 5사무소(미국, 중국, 싱가포르, 유럽, 부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펀드에 출자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12개 기관에서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민간 운용사(venture capital, VC)가 결성·운용하는 자펀드에 출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자펀드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 개요]

□ 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 개념

- **(정의)**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재간접펀드**

- **(도입 배경)** 30년 동안* 운용되는 모태펀드를 결성하고, 회수재원을 재투자하여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 공급**

* 「벤처투자법」 제70조제4항 및 동 시행령 제44조제2항(2006년~2035년)

- **(목적)**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결성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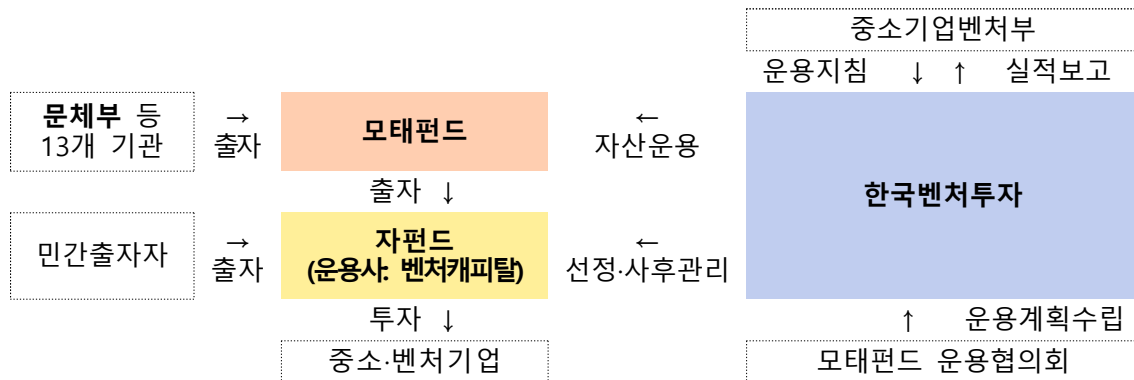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벤처투자촉진법」 제52조)

- **(운용구조)** 문체부 등 12개 기관*(10개 부처, 21개 계정)에서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민간 벤처펀드**에 출자

* 문체부, 중기부, 과기부, 보건부, 고용부, 교육부,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특허청, 체육공단, 중소기업단

** 자펀드 운용사(VC) 선정 → VC가 민간 투자 모집 → 자펀드(벤처펀드) 결성

<모태펀드 운용방식>



□ 모태펀드 현황 (2023.12월 말 기준)

- **(출자현황)** 10개 정부 기관, 3개 공공기관이 총 8조 8,948억원 출자
- **(조성·투자현황)** 11조 9,178억원 출자, 총 1,148개, 37조 327억원 규모 자펀드를 조성하고, **9,643개 기업에 29조 6,643억원 투자**
- **(회수 현황)** **269개 자펀드**(결성액 7조 5,244억원) **청산**을 통해 **5,002억원 초과수익 회수**(원금 1조 7,684억원+수익 5,002억원, 수익배수 1.28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위 모태펀드가 결성·운용됨에 따라 각 부처·기관은 기존에 운용하던 개별펀드를 모태펀드로 모두 이관하고 이를 한국벤처투자(주)에 위탁하여 운용하도록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문화·영화·스포츠·관광 분야의 중소·벤처투자를 위해 운용하던 펀드를 모태펀드로 이관하였음. 그에 따라 현재 모태펀드에는 ‘문화계정’, ‘영화계정’, ‘스포츠계정’ 및 ‘관광계정’이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이들 계정에 대한 출자금(예산 및 기금)으로 편성함으로써 각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 조달을 도모하고 있음.

특히, 문화계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4)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하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운용되는 모태펀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문화계정에 총 1조 2,257억원을 출자하여 총 3조 3,132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였고, 이를 통해 총 3조 2,868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콘텐츠기업 등에 공급하였음.⁵⁾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모태펀드 문화계정 현황(2006~2023)]

○ (일반 현황) 정부 출자 1조 2,257억원, 결성액 3조 3,132억원 등

(단위: 억원, 건)

출자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신규출자예산	4,631	360	530	540	630	1,130	1,148	1,388	1,900	12,257
총출자액	5,513	750	912	1,320	1,080	1,460	1,440	1,641	2,100	16,216
결성액	13,716	1,576	1,696	2,416	1,968	2,438	2,548	2,488	4,286	33,132
신규 자펀드수	61	7	10	9	10	11	11	8	15	142
투자액	15,614	2,022	1,785	1,629	2,394	2,259	2,504	2,233	2,428	32,868
투자건수	2,807	330	278	278	320	305	355	312	292	5,277

○ (유형별 투자현황) 프로젝트투자 67.8%, 지분투자 32.2%

* 프로젝트 투자 2조 2,280억원, 지분 투자 1조 587억원

(단위: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프로젝트	86.5	89.6	92.7	85.2	74.5	70.3	65.8	48.8	41.9	28.5	43.4	32.2
지분투자	13.5	10.4	7.3	14.8	25.5	29.7	34.2	51.2	58.1	71.5	56.6	67.8

○ (장르별 투자현황) 영화 36.0%, 방송 13.6%, 게임 12.9% 등

(단위: 억원, %)

구분	영화	공연	전시	게임	음원	애니/캐릭터	방송 콘텐츠	출판/만화	기타*	합계
2020	금액	377	199	1	404	82	342	274	198	2,258
	비율	16.7	8.8	0.0	17.9	3.6	15.1	12.1	8.8	100
2021	금액	316	161	62	569	110	210	474	167	2,504
	비율	12.6	6.4	2.5	22.7	4.4	8.4	18.9	6.7	100
2022	금액	274	105	39	382	156	252	516	148	2,233
	비율	12.3	4.7	1.7	17.1	7.0	11.3	23.1	6.6	100
2023	금액	312	109	26	265	149	240	642	74	2,429
	비율	12.8	4.5	1.1	10.9	6.1	9.9	26.4	3.0	100
누계	금액	11,831	3,544	524	4,234	1,022	3,295	4,464	916	32,868
	비율	36.0	10.8	1.6	12.9	3.1	10.0	13.6	2.8	100

* 기타: 두 개 이상 장르가 혼합된 것 등(비목적투자자 인한 문화산업 외 투자실적 포함)

○ (업력별 투자현황) 창업 3년 이하 초기 기업 투자비율 46.9%

(단위: 개, 억원, %)

구분	1년이하	3년이하	5년이하	7년이하	10년이하	14년이하	14년초과	합계
업체수	665	575	433	270	210	138	97	2,388
투자금액	8,179	7,218	6,015	3,877	3,417	2,249	1,913	32,868
비율(금액)	24.9	22.0	18.3	11.8	10.4	6.8	5.8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기준

다만,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별도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⁶⁾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⁷⁾으로 지정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펀드)’⁸⁾을 결성·운용하며 농어업경영체 등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자금
을 출자하고 있는바,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에도 K-콘텐츠가 세계적
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화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기술투자
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문화예술 분야
에 특화된 별도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문화·예술·콘텐츠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우리 문화·
예술 및 K-콘텐츠 등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6) 2010. 1. 5. 제정, 2010. 5. 26. 시행

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발전을 위
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
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
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
리주체”라 한다)

다만, 제정안에 따라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운용을 통하여 이미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모태펀드를 결성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지난 2009년 별도의 ‘농식품모태펀드’ 결성·운용을 추진한 것은 당시 모태펀드를 통해서도 농림수산물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전문기관이 농림수산물식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관리 등 업무를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음.⁹⁾

그러나 현재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모태펀드 전체 대비 10.8%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며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고,¹⁰⁾ 이를 통해 우수한 콘텐츠 기업¹¹⁾들을 발굴·육성하는 등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문화예술기술 모태펀드를 결성·운용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 11.

10) 모태펀드 전차 투자금액 32조 2,025억원 중 문화계정 투자금액은 3조 4,672억원(10.8%)임.

11) (게임) 크래프톤, 테브시스터즈, (영상) 에이스토리, (기술) 텍스터스튜디오 등

둘째, 투자운용의 전문성,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자금 운용에 관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투자 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을 축적해 온 한국벤처투자와 현행의 모태펀드를 통하여 일원화된 정책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투자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물론이나, 국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과 민간 출자금 등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회수한 재원을 투자 자금으로 다시 활용하는 등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는 구별되는 별도 성격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¹²⁾

이에 정부도 2011년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여 각 부처·기관이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투자관리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한국벤처투자와 모태펀드로 일원화하도록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별도 운용되고 있는 ‘농식품모태펀드’¹³⁾에 대해서도 위 발표 이후 현재까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로의 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¹⁴⁾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문화예술기술 모태펀드를 결성·운용하는 것은 다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12) 이에 따라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경우에도 자펀드 운용사의 선정은 한국투자벤처가, 자펀드의 운용 및 투자 결정 등은 해당 운용사가 담당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투자의 전문적 판단을 지원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3) 정부는 2022년 농식품모태펀드의 이관·통합을 추진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반발로 인하여 이를 2024년 말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유예한 바 있음.

14) 국회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 북 II(경제·산업 분야)”, 2024. 5.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제정안은 부처·기관별 개별펀드 운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중복투자 및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견지해 온 정책펀드 일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벤처투자 업계에서도 제정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¹⁵⁾ 심사 시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별도의 투자펀드 조성 및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의 설립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 그리고 중소·벤처투자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한국벤처투자 및 현행의 모태펀드를 통해 일원화된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것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15) 머니투데이, “문화모태펀드 법안 발의…VC업계 “시행착오만 되풀이””, 2024. 11. 4. 기사 참조.

2. 조문별 검토

가. 법 제명 및 총칙(안 제1장)

1) 제정안의 요지

제정안은 법 제명을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안 제1장 총칙으로 이 법의 제정 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문화예술기술기업’의 범위 및 이와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기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문화예술기술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기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문화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기술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

다.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기술기업(이하 “문화예술기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을 문화예술기술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제3조(문화예술기술기업의 범위) 문화예술기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가. 총매출액 중 문화예술기술산업 분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예술기술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문화예술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먼저, 제정안의 법 제명은 ‘문화예술기술’ 분야에 대한 별도의 투자조합(펀드)을 결성·운용한다는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다음으로, 안 제1조의 경우 ‘문화예술기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문화예술기술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이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다음으로, 안 제2조는 ‘문화예술기술산업’, ‘투자’ 등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문화예술기술산업’의 정의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16)의 문화산업 외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7)제2호의 문화산업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건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건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17)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기술 관련 산업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의 경우 문화산업과 구분되는 분야로서 투자 등 금융정책이 아니라 지원정책이 필요한 산업이며, ‘기술’의 경우 문화산업 및 예술에 부수되는 분야로서 문화산업 및 예술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산업 분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바,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다음으로, 안 제3조는 ‘문화예술기술기업의 범위’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¹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와 문화예술기술산업 분야를 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에 따라 결성·운용되는 문화예술기술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법에 따른 투자 대상에서 대기업 등을 제외하는 것은 문화예술기술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¹⁹⁾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19) 이에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다만, 안 제3조제2호가목은 특정 기업이 총매출액 중 문화예술기술 산업 분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문화예술기술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른 문화예술기술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은 ‘문화예술기술’ 관련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므로,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일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봄.²⁰⁾

다음으로, 안 제4조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이나, ‘문화예술기술’이라는 용어는 ‘문화예술기술산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임.

20) 참고로,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경우 ‘농림수산물식품의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라고 명시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문구를 추가하는 방법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최소 50%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같은 식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봄.

나.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 및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안 제2장)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2장은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 및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의 설립·업무 및 결산보고, 모태펀드의 결성 및 출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2장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와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 제5조(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이하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이하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①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그 밖에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②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의 업무 등) ①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2.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결성 및 운영
3.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4.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5.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6.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운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8.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

②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결산 보고)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먼저, 안 제5조는 문화예술기술 모태펀드의 운용과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가가 공사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안 제6조는 공사가 국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출자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펀드)’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관리주체가 일정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모태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안 제7조는 문화예술기술 모태펀드가 출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자펀드 및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한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안 제8조는 공사의 업무로 자펀드에 대한 출자, 자펀드의 결성·운영,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명시하고, 국가 등으로 부터의 자금 차입과 사채의 발행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공사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장 내 대부분의 조항은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법률 내용 이해의 용이성 측면에서 조문의 순서를 다소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봄.

다.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안 제3장)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3장은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자펀드)에 관한 내용으로, 모태펀드의 출자를 통한 자펀드의 결성 및 이에 대한 기금·보험회사 등의 투자, 자펀드의 등록, 자펀드의 업무 집행, 재산의 관리·운용, 결산 보고, 해산 등 규정과 함께 공모 자펀드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인 출자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3장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제10조(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
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
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
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 「은행법」 제2조의 은행
- ③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문화예술
기술투자공사는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
분하여 그 손실금을 부담한다.
- ④ 제18조에 따른 공모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전단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기술기업에 투자하거나 문화예술기
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나 제1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예술기술기업에 투자하거나 문화예술기
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
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
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출자금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2.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일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제2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취소 당시 임직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그 밖에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그 밖에 등록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업무의 집행 등) ①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 의무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3.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산의 관리와 운용)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업무집행조합원의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제15조(결산 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년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그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1.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7조(해산) ①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8조(공모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공모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 제64조·제65조,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제182조·제182조의2·제183조,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

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5조부터 제242조까지, 제244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및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 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모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거나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같은 법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0조(조합 재산의 보호)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 및 제7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규약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22조(준용규정)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로 본다.

②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의한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하여는 해당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먼저, 안 제10조는 벤처투자회사(VC) 등이 문화예술기술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펀드 조합원의 구성 및 손실금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안 제11조는 기금관리주체 등이 일정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기술기업에 투자하거나 자펀드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다음으로, 안 제12조는 자펀드가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 총액, 3년의 존속기간 등 요건을 갖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자펀드의 업무를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하도록 하면서 자펀드로 하여금 그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출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음으로, 안 제14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펀드의 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5조는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는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는 자펀드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안 제18조는 공모 자펀드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고, 안 제19조는 자펀드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안 제20조는 자펀드 재산의 보호, 안 제21조는 자펀드 관련 공시, 안 제22조는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3장 내 대부분의 조항 또한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18조에 따른 공모 자펀드에 대한 특례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는 공모 자펀드의 특성상 사모 방식에 비해 투자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더욱 엄격한 투자자 보호 등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은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배제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따른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라. 보칙·벌칙 및 부칙(안 제4장·제5장 및 부칙)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4장은 보칙으로서 조세특례, 정보 제공, 보고·출입·검사, 행정 처분 및 등록취소,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장은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음.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4장 보칙 제24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술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술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인력·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술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보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에게 업무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에 검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행정처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5.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28조(등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3조제3항에 따른 투자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5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9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장 벌칙

제32조(벌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결산서를 제출한 자
2.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1조를 위반하여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3조제1항제3호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에 대하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검토의견

먼저, 안 제2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술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문화예술기술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강화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세제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제정안의 규정은 재량사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해당 규정이 실질적인 세제지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도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근거를 두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조세특례는 효력이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안 제2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기술기업 등과 관련된 정보 및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을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 및 문화예술기술투자펀드 등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²¹⁾를 통해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 및 가치평가기관을 운영 중인바, 이와 중복되는 정보 제공 등 관련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다음으로, 안 제2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로 하여금 업무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7조는 행정처분, 안 제28조는 등록의 취소, 안 제29조는 권한의 위임·위탁, 안 제30조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 제31조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모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32조는 자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안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①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펀드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② 자펀드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③ 자펀드의 재산으로

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2. 평가 범위
3. 평가 수수료

⑥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④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펀드의 운용 등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형사 처벌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④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봄.

다음으로, 안 제33조는 결산서 미제출, 시정명령 위반, 유사 명칭 사용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끝으로, 제정안은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 및 이 법 시행 전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펀드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76